

의안번호	제 497 호
의 결 연 월 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4년 1월 15일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1. 1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본청 내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본청 내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책정 및 존속기한 설정

1) 미래교육추진단 13명(시행일~2027. 2. 28.)

나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: 변동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2) 입법예고: 2023. 11. 24. ~ 2023. 12. 14.(20일간)

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

별표 4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표(제3조 관련)

기관별	직급별	정원	존속기한
본청 (미래교육 추진단)	일반직 4급	0	2027. 2. 28.
	일반직 5급 이하	7	
	소계	7	
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1	
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5	
	소계	6	
	합계	13	

관계법령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0.4.7.] [대통령령 제30601호, 2020.4.7. 일부개정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18조(한시정원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

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 -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 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 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 3.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(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-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변동이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한시
정원을 정하는 것으로, 한시 정원 책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
하는 인건비 소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 : 행정국 행정과장 박영균